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35호
- 나. 발의자 : 왕정순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0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0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 및 시정 개선에 대해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안 제9조).
- 다.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라.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기간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기업 관련 시책 이행 여부를 반영하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사업 현황

-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제정(1999.6.1.)하여 여성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여성기업법」을 근거로 ▶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창업 교육, ▶ 인력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 정보 제공, 경영지도, ▶ 판매 촉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비대면 역량강화, ▶ 디지털

역량강화, ▶ 여성경제인단체 지원, ▶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2017.1.5.).

<여성기업 관련 주요사업 내역>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관부서 |
|-----------------|-------------------------------------|--------------------|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예비·초기창업 지원(북·남·동부) | 양성평등담당관 |
|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 공예·디자인 업종 예비·초기창업 지원 | |
|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 공예 업종 예비창업 지원 | |
| 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 | 서울시 창업보육기관* 입주심사시 가산점 부여 | 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5억원 이내, 이자보전 2.5%) | |
|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보조금 지급(2억원) | 경제정책과 |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및 홍보(법정의무비율 이상) | |
| 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운영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개최 | |

*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성장센터, DMC 혁신센터 및 산학협력연구센터, 게임콘텐츠센터

- 개정안은 「여성기업법」에 규정된 ▶ 시정사항 이행계획, ▶ 자금지원 우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여성기업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 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

다. 주요 개정사항

(1)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기간 구체화(안 제5조)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시정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며, 시정요청과 이행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추가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 이는 종전에 시정요청의 근거만을 규정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2019.4.23.)된 「여성기업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률과의 통일성·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다만, 시정요청사항과 그에 따른 이행계획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개정안 | 수정의견 |
|--|---|
| <p>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 <p>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그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

(2)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 신설 등(안 제9조)

-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을 신청할 경우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p> <p>① ~ ② (생략)</p> | <p>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p> <p>② ~ ④ (생략)</p> |

- 「여성기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제10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함.
- 또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서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하고(제2항),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신설함(제3항).

| 현 행 | 개 정 안 |
|--|---|
| <p>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9.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p><신 설></p> | <p>② -----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9. (현행과 같음) <p>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역량강화, 디지털 역량강화, 홍보 및 인식개선 등으로 확대된 바, 사업목적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한정하기 보다는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홍보 등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여성경제인협회¹⁾ 등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식일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서울시와 계약하는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제4항).

| 현 행 | 개 정 안 |
|--|---|
|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u>5천만원</u>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④ ----- ----- <u>1억원</u> ----- -----. |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자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종전의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함(2020.5.).[참고자료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여성경제인 양성,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창업 지원 및 촉진,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 벤처기업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9.20.)되면서 확대된 수의계약 한도액 규정이 명문화되었고 이를 개정안을 통해 반영하게 됨.

(3)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안 제10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0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시장은 「서울 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

-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여성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므로 서울시는 자체평가권을 가진 출자·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가산점만 부여

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2],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은 인정됨.

(4) 포상(안 제14조)

- 개정안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3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음.
- 그러나 포상근거를 개별조례에 명시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상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여성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시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수의계약 추진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실상 여성기업을 위한 우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최범준 | 02-2180-8056 |

[참고자료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 구 분 | 현행 규정 | 시행령 개정 이후 | |
|-----------------------|------------------------------------|--|--|
| 긴급수의계약 사유 | <u>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u> | <u>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u> | |
| 수의계약 대상금액 | 공사 | 종합 추정가격 <u>2억원</u> 이하 전문 추정가격 <u>1억원</u> 이하 기타 추정가격 <u>8천만원</u> 이하 | 종합 추정가격 <u>4억원</u> 이하 전문 추정가격 <u>2억원</u> 이하 기타 추정가격 <u>1억6천만원</u> 이하 |
|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5천만원</u>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1억원</u> 이하 |
| |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5천만원</u>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1억원</u> 이하 |
| |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5천만원</u>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u>1억원</u> 이하 |
| 수의계약 절차 | <u>재공고 유찰시</u> 수의계약 허용 | <u>1회 유찰시</u> 수의계약 허용 |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u>100분의 5</u> 이상 | 입찰금액의 <u>1000분의 25</u> 이상 | |
| 계약 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u>100분의 15</u> 이상 | 계약금액의 <u>1000분의 75</u> 이상 |
|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u>100분의 10</u> 이상 | 계약금액의 <u>100분의 5</u> 이상 |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u>100분의 40</u> 이상 | 계약금액의 <u>100분의 20</u> 이상 | |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u>14일</u> , 연장 <u>7일</u> | 완료통지일로부터 <u>7일</u> , 연장 <u>3일</u> | |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u>5일</u>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u>3일</u> 이내 | |
| 수의계약 대상제품 | <u>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 혁신 신제품 등</u> | <u>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u> | |

※ 빨간 박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참고자료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세부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 | 지표성격 | 가중치 |
|--|--|-------|---------------------------|
| 1. 리더십·전략 | | | 14.00점 |
| 1) 기관장 리더십 | | 정성 | 7.00점 |
| ① 경영총의 리더십(적극행정 포함) | | 정성 | 3.00점 |
| 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 정성 | 2.00점 |
| ③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 | 정량 | 2.00점 |
| 2) 전략기획 | | 정성 | 2.00점 |
| ① 경영방향(비전 및 경영 목표 관리) | | 정성 | 1.00점 |
| ② 사업관리 | | 정성 | 1.00점 |
| 3) 외부만족도(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도) | | 정량 | 5.00점 |
| ① 외부만족도 조사결과 | | 정량 | 3.00점 |
| ② 전년대비 개선도 | | 정량 | 2.00점 |
| 2. 경영시스템 | | | 15.00점 |
| 1) 조직관리 | | 정성 | 2.00점 |
| ① 조직효율성 증진노력 및 발전성과 | | 정성 | 2.00점 |
| 2) 인사관리 | | 정성/정량 | 5.00점 |
| ①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 | 정성 | 1.00점 |
| ② 인적자원 관리(인력개발,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 | 정성 | 2.00점 |
| ③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 | 정량 | 1.00점 |
| ④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 | 정량 | 1.00점 |
| 3) 재무예산관리 | | 정성/정량 | 8.00점 |
| ① 재정·예산관리의 적정성 | | 정성 | 5.00점 |
| ② 출연금 관리의 적정성(※ 서울의료원 미적용) | | 정량 | 1.00점 |
| ③ 사업수행효율성 | | 정량 | 1.00점 |
| ④ 일반관리비충당률 | | 정량 | 1.00점 |
| 3. 사회적책임 | | | 21.00점 |
|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 | 정성/정량 | 6.50점 |
| ① 양육자 친화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 | 정성 | 2.50점 |
| ②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 장애인 채용 실적 / 고교졸업자 | | 정량 | 4.00점(가점 0.50, 감점 -2.00점) |
| 2) 윤리경영 | | 정성/정량 | 8.00점 |
| ① 성평등 기반조성 | | 정량 | 2.00점(감점 -2.00점) |
| ②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개선도) | | 정량 | 4.00점 |
| ③ 인권경영 | | 정량 | 2.00점(감점 -0.10점) |
| 3)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 | 정성/정량 | 3.00점 |
| ①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장애인·중증장애인·소기업 소상공인·사회적기업) | | 정량 | 1.00점 |
| ② 이해관계자 참여 | | 정성/정량 | 2.00점(가점 0.50점) |
| ③ 환경경영 | | 정성/정량 | 예고지표 |
| 4)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 | 정성/정량 | 3.50점(감점 -3.00점) |
|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히 시설물·프로그램 안전 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감점) | | 정성/정량 | 3.50점(감점 -3.00점) |
| 4. 사업성과 | | | 50.00점 |
| 1) 혁신성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달성실적 | | 정성 | 10.00점 |
| 2) 혁신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 | 정성 | 5.00점 |
| 3) 혁신과제(경영평가 사업지표) 유형별 경영성과 | | 정량 | 35.00점 |
| 총점 | | | 100.00점 |
| 감점(서울시 정책준수 항목) | | | |
| * 임금피크제 이행실적($\Delta 0.5$),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실적($\Delta 2.0$),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Delta 2.0$),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Delta 5.0$), 지원기능 인력비율($\Delta 0.5$), 관리직 비율($\Delta 0.5$) | | | 최대 감점 10.50점 |